

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세칙

HK세칙 제4호

제정 : 2011년 5월 31일

개정 2011. 08. 19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인문학연구단(이하 '연구단')의 인문한국(HK) 교수(이하 'HK교원'이라 한다)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격)

-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「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」에 명시된 자격조건에 합당한 자에 한한다.
- ② HK교원은 HK교수, HK부교수, HK조교수로 구분하며, 최소자격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 1. HK교수는 HK부교수 또는 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최근 5년간 800점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
 2. HK부교수는 HK조교수 또는 그에 상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최근 4년간 600점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
 3. HK조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최소 2년을 경과한 자로서 박사학위 논문 외에 최근 3년간 300점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
- ③ HK교원은 서울대학교 특정단과대학의 학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를 총 정원의 50% 이내로 한다.

제3조 (신규채용절차)

- ① HK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모집분야는 연구단 사업위원회에서 입안하며, 연구단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.
- ③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단계별 심사항목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.
 1. 기초 및 전공심사 (1단계)

가.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	[상·중·하]
나.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	[40점]
다. 총괄연구업적	[20점]
 2. 면접심사(2단계)

가. 공개발표	[20점]
나. 연구계획서(자기소개서 포함)	[15점]
다. 임용적합성	[5점]
- ④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, 공개채용지원 추천자,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곤란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.
- ⑤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임용후보자 예정직급 이상인 본교 전임교수 또는 학문적 업적과 교육경험이 풍부한 학외인사 중에서 선정한다.

제4조 (기초 및 전공심사)

- ① 연구단 인사위원회는 모집분야별 응모자 전원의 연구실적물을 심사할 수 있는 본교 이외의 학외인사 1/2 이상을 포함한 8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, 통일평화연구원장(이하 '원장'이라 한다)은 이들 중 모집분야별로 본교 이외의 학외인사 1/2 이상을 포함한 5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- ② 연구실적물의 범위, 인정 점수 및 요건은 「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」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,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300점 이상 400점 이하의 출판된 연구물에 한한다. 제출된 4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 중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3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연구실적물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내용평가 평균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인정점수가 높은 것부터 최종 내용평가에 반영한다.
- ③ 전공부분의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심사는 연구실적물을 상(3점), 중(2점), 하(1점)로 평가하되 그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의 평균이 중(2.0)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중(2.0)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.
- ④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점은 수(5점), 우(4점), 미(3점), 양(2점), 가(1점) 등급으로 평가하되, 그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균이 4.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우(4.0점) 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.

제5조 (총괄연구업적심사)

- ① 총괄연구업적심사는 응모자가 제출한 지원서, 총괄연구실적목록, 자기소개서, 연구계획서, HK아젠다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두 영역으로 종합 평가한다.
 1. 총괄연구실적과 학술활동
 2. HK아젠다 적합성 및 기여가능성
- ② 3인의 심사위원이 각자 20점 만점으로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다. 단, 심사위원간 평가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2인을 추가 위촉하여 평가하도록 한 후 그 평가결과를 중전의 평가결과와 합하여 그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취득점수로 한다.

제6조 (공개발표심사)

- ① 연구단 인사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결과 적격자 중 상위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공개발표심사 대상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공개발표 심사위원은 연구단 인사위원회가 8인 이상을 추천하고 그 중 원장이 5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- ③ 공개발표는 전문성, 전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, 그 중 최고 및 최저 점수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그 평가점수로 한다.

제7조 (연구계획서 심사)

- ① 연구계획서 심사위원은 연구단 인사위원회가 5인 이상의 교내 인사를 추천하고 그 중 원장이 3인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.
- ② 연구계획서심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
1. 연구주제 및 방향의 적합성
2. HK 연관 사업 수행능력

제8조 (임용적합성 심사)

- ① 임용적합성심사는 연구단 인사위원회에서 5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각 인사위원의 평가 점수의 평균을 임용적합성의 평가점수로 하며, 평점 4.0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.
- ② 임용적합성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, 1단계 평가점수, 공개발표 및 연구계획서 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- ③ 임용적합성 심사의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은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(2점), 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(2점), 대학 및 사회기여도(1점)로 한다.
- ④ 다만, 연구윤리 위반,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이전 단계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당해 분야 교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항목별 평가를 하지 않고 종합평가할 수 있다.

제9조 (임용추천)

- ① 연구단 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후보자 가운데 총점 80점 이상인 자로서 임용적합성 심사에서 '적격'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 추천한다.
- ② 원장은 「서울대학교 인문한국(HK)교수 임용 및 운영 규정」 제7조 1항에 따라 심사 종료 후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개정)

- ① 이 지침의 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HK사업 운영 방침에 부합하여야 한다.
- ② 심사요건을 강화하거나 심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은 연구단 사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통일평화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된 후 원장이 이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11조 (기타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」, 「서울대학교 인문한국(HK)교수 임용 및 운영 규정」, 「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관련 운영지침」을 따른다.

부칙(HK세칙 제4호, 2011. 08. 19.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